# 학폭위

| 소송종류 | 행정소송 | 법 원 명 | 인천지방법원 |
|---|---|---|---|
| 사건번호 | 2019구합○○○○○ [1심] | 사건유형 | 학교폭력 |
| 원 고 | □□□ | 피 고 | ○○○○○○○○○고등학교장 |
| 판결선고일 | [1심]2019. 6. 28. 원고패소 | 비 고 | |

| | |
|---|---|
| 사건개요 | 가. 원고와 A, B, C, D(이하 '상대학생들'이라 한다)은 2018학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 같은 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다.<br>나. ○○○○○○○○○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8. 7. 18. '원고가 2018. 5.경부터 상대학생들 등에게 외모 비하 발언을 하는 등 여학생들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출석정지 13일(제6호), 부가적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기로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8. 7. 19.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조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br>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8. 1.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8. 10. 22. 기각되었다. |
|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br>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청구취지 | 피고가 2018.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출석정지 13일 및 부가적 특별교육 5시간'의 처분을 취소한다. |
| 판결이유 | ❍ 원고가 3항 기재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br>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본인도 2018. 7. 18. 이 사건 자치위원회에 참석하여 3항 기재 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원고의 아버지가 상대학생들이 거짓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대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함에 따라 2018. 11. 1. 개최된 이 사건 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상대학생들 전원이 일치하여 '원고가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고, 직접 들었으며, 다른 학생들 중에도 들은 학생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그 진술을 들은 위원들 중 상대학생들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위원은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만장일치로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의결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3항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br>원고는, 이 사건 자치위원회에서 담임선생님이 기말고사 이후 상대학생 어머니가 찾아가서 말하기 전까지 원고의 행위를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4월 초부터 시작되었고, 담임선생님이 여러 차례 주의를 주고 시정하도록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는 상대학생들의 진술이나 피고의 행정심판에서의 답변이 허위라고도 주장하지만, 담임선생님이 위와 같은 진술에 곧바로 이어서 |

| | |
|---|---|
| | “그 때는 성희롱 한다는 것은 몰랐고 그냥 욕하는 것만 들어서 계속해서 주의를 주었고 장난이 너무 심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담임선생님은 원고의 행위 중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말고사 이후 상대학생 어머니가 찾아와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상대학생의 진술이나 피고의 답변 내용이 거짓이라고 볼 수도 없다.<br>**○ 원고의 1항 및 2항 기재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br>원고는 1항 및 2항 기재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하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바(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1항 및 2항 기재 행위는 모욕, 언어폭력, 언어적·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사소한 장난이나 놀림으로 여겼을 수 있으나 상대학생들은 위와 같은 행위가 고의성을 가지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위축, 모욕감 등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br>**○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br>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곧, ① 원고는 상대학생들 등에게 통상의 학생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말과 행동의 정도를 넘어 반복적으로 외모 비하 발언과 폭언,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 등으로 상대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서적 피해를 준 점, ② 원고는 상대학생들의 학교폭력 신고가 있었음에도 상대학생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아니하였고, 상대학생들이 원고에게 말로만 사과를 하느냐고 하자 “그럼 내가 사줄까”라고 말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그 밖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 소결**<br>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 **결 론**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